●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시회적용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918)

2024. 6 . 17.

보건복지위원회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1918

I . 동의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안 일: 2024. 05. 27.

다. 회 부 일: 2024. 05. 3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응능력 향상을 위해 자립재활운동, 자립생활지원, 심리상담, 취업 지 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써, 우리 시가 사회복지법인 대 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위 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법인 등에 센터 운영을 계속 민간위 탁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센터
- 2) 위탁유형 : 시설형
- 3)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4)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27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유아~청년 발달자행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하고 특수체육,심리상담,발달변화 검사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 해야 하므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임.
 - 따라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을 항상시킬 수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5) 위탁사무
 - 발달장애 유아~청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 · 자립재활운동사업 : 수준별(1~4단계) 운동프로그램 제공
 - · 자립생활지원사업 : 학령별(초등~고등반) 자립생활기술 훈련프로그램 제공
 - · 심리지원사업 : 도전적 행동 완화 및 사회적 기술 발달 위한 심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프로그램
 - · 청년더부러지원사업 : 청년 발달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취업지원 등)
 - · 지역사회기관 연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발달장애인 가족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건물 및 재산 관리
- 6)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26, 3·4층 (마천동)
 - ○시설규모: 대지면적 1,612m², 건축면적 837m²

(지하1층~지상4층 중 3·4층 사용)

- 운영인력 : 14명
 - 센터장 1명, 부장 2명, 팀장 2명, 사원 9명
- 민간위탁기간 : 3년(2025.1.1.~2027.12.31.)
- 위치도



- 7)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재위탁)
- 8) 소요예산 : 금654,558천원(2024년 예산)
 - 인건비 624,320천원, 운영비 30,238천원
- 9) 심의결과 : 적정(2024년 제3차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센터'의 위탁기간 (22.01.01~ 24.12.31)이 '24.12.31.자로 만료예정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이하 '민간위탁 조례')¹)
 및 제12조²)에 따라 시설운영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아~청년 발달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자립재활운동사업 : 수준별(1~4단계) 운동프로그램 제공 (운동수행 능력의 발달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 자립생활지원사업 : 학령별(초등~고등반) 자립생활기술 훈련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적응능력의 발달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 심리지원사업: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도전적 행동 완화 및 사회적 기술 발달 통한 사회적응 능력 강화)

¹⁾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개정 2019.3.28., 2021.12.30., 2023.10.4.>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 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3.28.>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4.>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²⁾ 제12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2015.7.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6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한다.

③ 재계약은 1회에 한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3.10.4.>

- 청년더부러지원사업 : 청년 발달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취업지원 등)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건물 및 재산 관리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경위〉

차수	수탁기간	수탁기관	수탁자 선정방법	비고
1차	05.06.28.~08.01.31.	(사)종교인평화봉사단	시범운영	
2차	08.02.01.~10.12.08.	(사)종교인평화봉사단	공모	
3차	11.01.01.~13.12.31.	사복)한국장로교복지재단	공모	
4차	14.01.01.~15.12.31.	사복)한국장로교복지재단	재계약	
5차	16.01.01.~18.12.31.	사복)한국장로교복지재단	재계약	
6차	19.01.01.~21.12.31.	사복)한국장로교복지재단	공모	
7차	22.01.01.~24.12.31.	사복)한국장로교복지재단	재계약	

2 민간위탁 대상여부 검토

○ 「장애인복지법」제35조³⁾(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

³⁾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 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 스 제공 등)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민간위탁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
 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유아~청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것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5) 등 유사시설들이 있는 바 상호 중복되는 사업들은 없는지, 통폐합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3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내용 검토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자립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유아에서 청년(만24세 이하) 발달장애인에게

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 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⁵⁾ **커리어플러스센터란** 18세이상 일반고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적성에 기반한 취업 훈련기관「서울시 커리어플러스센터」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자립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훈련·고용 지원인력 양성·관리 및 업체 개발관리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전문기 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는 이용자 발달 정도에 따른 단계별 프로그램인 자립재활운 동, 자립생활훈련,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심리치료, 청년더부러지원, 지역사회협력,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센터의 '23년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실인원 202명(연인원 27,578명)을 대상으로 6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립재활운동의 경우 대기자 수가 235명으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표3〉 '23년 운영실적

(단위:명)

구분	합 계	자립재활 운 동	자립생활 지 원	심리지원 (가족지원 등)	청년더부러 지 원	지역사회 협 력	운영지원 (홍보,교육훈련)
등록인원	248	114	46	39	49	_	_
연인원	27,578	8,321	12,584	1,604	2,162	2,746	161
실인원	202	86	36	29	47	4	_
대기자수	235	235	_	_	_	_	_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

- 2024년 제3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결과에서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 인사회적응 지원센터는 인력 운영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관 리하고 사업전반에 대해 자제적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이 우수사항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과도한 예비비 편성으로 예비비 사용 한정성의 원칙을 위배하였고,
 기관고유의 프로그램 실적보고서 기재 등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었음.

기관의 종합성과평가점수는 77.16점으로 재위탁 요건은 충족(75점이상)함.

〈2024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주요내용〉

사 업 활성화	 새로운 이해관계자 개발이나 협조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 작업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특히 MOU체결의 다양한 내용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부족함 전국에서 유일한 기관인 만큼 더 큰 필요나 욕구가 있는 대상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홍보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적인 홍보내용 및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지도점검 이행노력	 다년간의 운영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다수의 지적사항이 예산, 인사, 사업 전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시급한 개선 대상임 과거 발생한 지적사항들을 체계화하여 담당자에게 책임 이행을 위해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지도점검에서는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개선요청 사 항 (공통지표)	•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 현황은 파악되고 있는지? 이를 통해 본 기관 고유의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실적보고서상에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됨
개선요청 사 항 (사업지표)	 사업의 수행실적이 목적과 내용과 적절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나 현재는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개입이나 평가만 이뤄지고 있음 대부분의 사업지표들이 단순히 척도만을 사용하거나 같은 질문을 통해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음. 다양화해야 함 참여율에 관련한 지표의 경우 사업참여를 통한 효과성을 나타낼 만한 지표를 사용해야 함.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만으로 사업효과성을 측정할 수 없음

〈 2023년 지도·감독 점검사항 〉

점검일시	지적사항	
ㅇ 1차 : 2023. 7.18.	○ 법인전입금(62,225,323원)집행계획 제출 ○ 정기재물조사 결과 사업결과보고 시 함께 제출 할 것	
ㅇ 2차: 2023. 12. 20.	 ○ 과도한 예비비 편성 → 11월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여 예비비 19백만원 증액 ○ 자부담 집행 저조 ○ 예산 변경 시 구비서류 미흡 	완료

- 지도점검이행노력에도 다년간의 운영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다수의 지적사항이 예산, 인사, 사업 전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시급한 개선 대상이 라는 지적과 함께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지도점검에서는 지 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임
- MOU 체결의 실적관리, 기관 고유의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위한 지표 적용 관리 등 센터 고유의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효과성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을 통해 유사중복사업 기관과의 차별성을 강화해나갈 필요성이 있음.

4 종합의견

○ 금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법적인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평 생교육센터, 장애인 복지관, 커리어플러스센터 등 기능이 유사한 기관 들이 있어 중복사업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기존 운영 성과 평가시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요청 사항등을 고려하여 추후 민간위탁 시 센터 운영을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음.

붙임 1 동종(유사)사무 비교표

□ 발달장애인 지원기관 비교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목적 :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ㆍ사업대상 : 전체 발달장애인

· 주요업무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공공후견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상담 통해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지원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 발달장애인 보호 위한 현장조사·보호조치,

발달장애인이 당사자가 된 재판의 보조인 참석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 성인 발달장애인 위한 공공후견인 감독 업무지원

・운영현황: 1개소(중구) / 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

2.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설치목적 : 미성년(전공과* 학생 포함)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능력 향상

* 전공과 :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 제공 위해 특수학교(급)에 설치한 수 업 연한 1년 이상의 교육과정

· 사업대상 : 미성년 발달장애인

· 주요업무 : 미성년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자립재활운동 : 개별 운동능력에 맞는 운동프로그램 제공

- 자립생활지원 : 학령별(초등~고등) 필수 자립생활기술 지원프로그램 제공 (예. 초등반-식습관 훈련, 중등반-화폐 사용법, 고등반-직업체험교육 등)

- 심리치료지원 :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가족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 청년더부러지원 : 청년 발달장애인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협력 : 유관기관과 MOU 통한 프로그램 연계, 사회복지 전공생 실습 지원 등

· 운영현황 : 1개소(송파구) / 사복)한국장로교복지재단 민간위탁(시립시설)

3.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목적 : 학령기 이후 계속 교육받고자 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직업능력 향상 및 사회적응 교육 제공

· 사업대상 : 성인 발달장애인

· 주요업무 : 성인 발달장애인 위한 직업교육 등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 직업기술, 건강관리, 사회기술(사회성 증진),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

· 운영현황 : 25개소(전 자치구) / 자치구 민간위탁(구립시설)

실행 기관

계획

기관

□ 차이점

- ㅇ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는 **미성년(만 24세 이하)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기관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 가능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학령기 이후 계속 교육받고자 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기술, 건강관리,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학교와 같이 반을 구성하여 주5일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을 수강함
 - * 필수과목: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건강관리, 직업전환교육, 긍정적 행동지원
 - ◆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는 미성년 발달장애인에게, 발달장애인평생교육 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은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대상을 미성년과 성인으로 구분하여 연령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ㅇ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u>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는</u> 미성년(만 24세 이하)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접 실행하는 기관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음. 또한, 매년 이용자 발달 검사를 통해 발달변화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단계를 조정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u>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u>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상담을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파악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으로, 서비스를 직접 실행하기 보다는 계획하는 기관에 가까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

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중앙센터를 설치하고, 각 사·도에 지역센터가 설치되어 주로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주간 활동, 방과후활동, 긴급돌봄, 공공후견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붙임 2 추진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 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